

## 미국이민국 여전히 원래의 2012년 지침에 따라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승인

2015년 2월 16일에 연방지방법원에서 미국이민국이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DACA)를 위한 확대 지침을 실행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지만 동 법원 명령은 원래의 지침에 의거한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신청을 계속 처리하는 이민국의 권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가 2012년에 수립된 지침에 의거하여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나 귀하께서 아는 사람이 적격자인 경우,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전히 2년 간의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허가과 노동 허가를 최초로 또는 이의 갱신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12년 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최초의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 미만이었으며,
- 16회 생일에 이르기 전에 미국으로 왔으며,
- 2007년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미국 내에 거주하였으며,
- 2012년 6월 15일에 그리고 미국이민국에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을 할 당시에 실제로 미국 내에 있었으며,
- 2012년 6월 15일에 합법적 지위가 없었으며,
- 현재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였거나 고등학교로부터 수료증을 받았거나 종합교육개발(GED) 증서를 받았거나 미국 해안경비대나 군대의 명예 제대 재향군인이며, 그리고
- 중죄, 중대한 경범죄, 3회 이상의 기타 경범죄 판결을 받지 않았으며 달리 국가 안보나 치안에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

최초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지침을 충족하고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귀하는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일시입국 허가 없이 2012년 8월 15일 또는 그 이후에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았으며;
- 승인된 귀하의 최근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신청을 제출한 이래로 계속 미국 내에 거주하였으며, 그리고
- 중죄, 중대한 경범죄, 3회 이상의 경범죄 판결을 받지 않았으며 달리 국가 안보나 치안에 위협을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갱신 신청은 현재의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기간 및 취업 허가가 만료되기 150일 내지 120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체될 경우 저희가 귀하의 케이스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현재 유예 조치와 노동 허가가 만료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의 최초 신청 또는 갱신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는 [uscis.gov/daca](http://uscis.gov/daca) 또는 [uscis.gov/acciondiferida](http://uscis.gov/acciondiferida)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민 사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과 인가 받은 법률 서비스처를 찾는 방법을 배우시려면 [uscis.gov/avoidscams](https://uscis.gov/avoidscams) 또는 [uscis.gov/eviteestafas](https://uscis.gov/eviteestafas)를 방문하십시오.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는 두려움 없이 일하게 해드립니다. 자격을 갖춘 경우 자신감을 가지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León Rodríguez**

미국이민국장